

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산신탁제1호[채권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
- 2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생략)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없음 (신설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현행과 같음) 종류C1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C-i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/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(계속)	종류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	종류S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3조의2 (투자신탁의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등)	제3조의2 (투자신탁의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등) ①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 연금저축계좌” 의 가입자에 한한다. ② 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(이하 “납입증명서” 라 한다)를 발급한다. 다만, 수익자가 가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	(삭제)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C1 수익증권 (신설) 2. 종류S-P 수익증권 (이하 생략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C1 수익증권 2. 종류C-i 수익증권 3. 종류S-P 수익증권 (현행과 같음)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39조 (보수)	제39조 (보수) (생략) ③ (본문 생략) 1. 종류C1 수익증권 (생략) (신설) 2. 종류S-P 수익증권(생략)	제39조 (보수) (현행과 같음) ③ (본문 현행과 같음) 1. 종류C1 수익증권 (현행과 같음) 2. 종류 C-i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6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2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 3. 종류S-P 수익증권(현행과 같음)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
- 2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-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4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----	-----	-----
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*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 없음 (신설)	제 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*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1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C-i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/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	종류S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신설)	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i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보수(0.26%), 판매회사보수(0.01%), 신탁업자보수(0.02%), 일반사무관리보수(0.015%)
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
4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: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
 - 2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 -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 2부 1. 보수 및 수수료 *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1 수익증권: 제한 없음 (신설)	제 2부 1. 보수 및 수수료 *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1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C-i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/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1. 보수 및 수수료 (계속)	종류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	종류S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
1. 종류 C1, S-P 수익증권 가입자격 문구 변경 & 2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: 제 2부 1. 보수 및 수수료 (계속)	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신설)	*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i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보수(0.26%), 판매회사보수(0.01%), 신탁업자보수(0.02%), 일반사무관리보수(0.015%)

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
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
전문인력

제1부 5. 운용전문인력

제1부 5. 운용전문인력
- **최근현황**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